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자 동의 없는 보호시설 입소 근거 등 마련〉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9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29.
3. 회 부 일 : 2024.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실종아동 가운데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이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 등 보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을 단기간이나마 보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명확히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나.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등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와 명칭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줄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해당 실종아동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실종아동 보호 시 보호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 없이 보호시설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7조의5제1항 신설), 아동이 원하고 가정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 중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그 보호 사실을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실종아동등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자의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경우 보호시설의 위치, 구체적인 명칭, 전화번호 등 해당 보호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실종아동등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실종아동등이 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실종아동등이 가정으로의 복귀

	가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 단되면 보호자가 보호시설에서의 실종아동등 보호에 대하여 반대 의 사표시를 하더라도 해당 실종아동 등을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	--

경찰청이 제출한 2023년 실종아동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13세 이
상이 19,575명으로 전체 실종아동(25,628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4%에 이르고, 실종원인은 가출, 가정문제, 교우 관계 등 자발적 원
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연령대별 실종아동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20년	409	419	584	1,361	2,692	3,427	2,984	2,759	2,328
'21년	429	471	687	1,491	3,143	4,003	3,565	3,120	2,554
'22년	479	627	1,125	1,919	3,680	5,213	4,306	3,728	3,119
'23년	407	512	896	2,035	3,642	4,759	4,593	3,599	2,982
'24년 11월	411	454	818	1,813	3,833	4,511	3,979	3,444	2,634

※ 자료: 경찰청

〈실종원인별 실종아동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보호자 이탈	상습 가출	가정 문제	구직 문제	진학 문제	교우 관계	이성 문제	유기	자살 의심	기타*
'20년	19,146	1,772	1,275	3,898	29	180	996	306	35	237	10,293
	100(%)	9.3	6.7	20.4	0.2	0.9	5.2	1.6	0.2	1.2	53.8
'21년	21,379	1,695	1,617	4,097	28	217	1,046	294	32	358	11,848
	100(%)	7.9	7.6	19.2	0.1	1.0	4.9	1.4	0.1	1.7	55.4
'22년	26,416	2,066	2,057	4,457	57	221	1,185	304	16	664	15,201
	100(%)	7.8	7.8	16.9	0.2	0.8	4.5	1.2	0.1	2.5	57.5
'23년	25,628	1,958	1,969	4,005	317	221	976	367	45	761	13,799
	100(%)	7.6	7.7	16.7	0.1	0.9	4.0	1.2	0.1	3.1	57.6

※ 자료: 경찰청

여성가족부의 2023년 조사 결과¹⁾,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위기 청소년의 72%가 부모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는 가출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실종 당시 만 18세 이하의 가출아동을 실종아동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함을 규정²⁾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은 청소년쉼터 내방 청소년 중

1) 통계청·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통계>, 2024.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제6조(신고의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 한다)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실무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동의를 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학대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출을 하여 보호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으나, 보호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가정을 이탈한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시설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 실익과 관련하여 현재 하위법령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설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정하려는 바는 이미 시행 중인 내용으로 판단됨.³⁾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둘째,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시설 입소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친권자의 양육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음.

셋째, 경찰청은 개정안의 주된 보호법익이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보다는 아동을 학대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 보호시설에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종아동법이 아닌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더 적합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44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4.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